

인도법논총 투고원고 심사 지침

(2011. 5. 11)

개정 2013. 3. 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발간하는 인도법논총의 편집에 있어 투고된 논문, 자료, 서평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인도법논총에 투고된 모든 논문, 자료, 서평 등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제3조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

- ① 제2조에 투고된 논문은 인도법논총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②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③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4부와 원고파일을 인도법연구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구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②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 예정 논총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심사방법)

- ①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 3.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불가
-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2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7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이 인도법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①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 ②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 ③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 ④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 ⑤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제8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